

1. 개정이유

「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라 민간부문에 대하여 신기술의 실험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시 신청인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「국방정보화법 시행령」의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, 시설 및 장비 이용허가 신청서의 서식을 개정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별지 제2호서식 ‘시설 및 장비 이용허가 신청서’에 신청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, 신청인 제출서류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변경하며 이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신설하고, 2014년에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시 제출서류에서 제외된 재무제표를 삭제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 타 : 특이사항 없음

국방부령 제 호

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
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시설 및 장비 이용허가 신청서

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시		처리기간 30일	
신청인	업체명		사업자등록번호		
	성명		연락처		
연구개발 사업 개요	사업명		대상 부대		
	사업 기간		소요예산		
	사업 내용				
	인원·물자투입계획				
신기술 실험·발전 계획	목적 및 필요성				
	적용 신기술 소개				
	기대 효과				
	구축 후 발전 방향				
이용허가 요청대상 (시설 및 장비)	대상	기간	요청 사유	비고	
그 밖의 사항 (비용 등)					

「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 및 장비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방부장관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신기술 실험계획서 1부. 2. 기술능력 설명서 1부.	수수료 없 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사업자등록증명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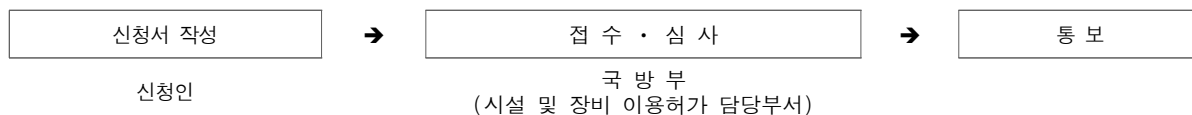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